

#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안내③

4대보험 및 산재처리 등 각종 노무실무는 내용이 복잡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노무비 지출로 이어진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가 인사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노무관련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5일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지난 8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편집자주]

## 퇴직금 지급관리

-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제8조).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조1항).

- 일용근로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통산하는 요건

일용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통산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1호에 의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근로의 대체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퇴직금 지급관리 - 사례1

타일공이 1인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10년 이상을 근로해오면서 그 근로기간 전체에 관해 퇴직금을 청구해 온 사건

① 근로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15일 이상 30일까지 일당제 타일공으로 계속근로해 왔고 그 내역을 소형달력으로 출결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왔고,

② 근로자는 다소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한 달 동안 근로한 노임을 매월 1회 일시에 지급받아 온 사실이 있고,

③ 비록 일감이 없어 사용자의 근로지시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업자의 의뢰를 받아 일용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동일기능을

가진 다른 일용근로자를 대신 종사하도록 대체한 일도 없었으며,

④ 업무를 도급으로 수급받아 처리하거나 위임 형태의 성과급을 받은 사실도 없이 오직 일당제 월급형태로 수령했으며,

⑤ 다만 중도에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7일이상 결근한 일이 있었던 경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왔고 근로의 대체성도 없는 등 전체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도 어렵고, 입사일 이후부터 사건을 제기할 때까지 계속근로의 단절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하고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30일로 곱하고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와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면적의 타일공사를 평방미터 당 혹은 평당 얼마씩 하는 도급방식”으로 시공을 위임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출퇴근의 구속없이 독립하여 자재나 타일 시공장비 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타일 보조공이나 잡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완성하고 그에 상응한 도급금액을 지급받아 인건비와 자재비, 공구 손실료에 충당하고 나머지 이윤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10여년간을 계속 종사해 왔거나, 전체 10년의 기간 중 후반부 5년간만을 그렇게 해왔다면 문제는 다르게 봐야한다.

즉, 일당제 근로자로 일해온 전반부 5년간은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10년의 기간이 지나 도급위임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을 기산해야 할 것이며, 후반부에서 도급으로 일해온 5년간은 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 근로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자체

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도급 5년의 기간 중 발생한 체불대금이 있다면 이는 일반채권의 청구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당제로 종사한 전반부 5년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청구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직일 즉, 도급관계 종료일 현재 그 임금의 정가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이 남아 있어야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퇴직일 현재 정가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그 채권은 도급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지급관리 - 사례2**

일용근로자가 1년 동안의 기간 중 다수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근로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1개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전체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으로 볼 수는 없음

◎ A라는 근로자가 '07.1.1부터 K건설에 소속되어 미장공으로 근로하던 중 8개월 후인 '07.9.10일 경부터 수주공사가 없어 K건설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H건설에서 1달간 근로하다가 10.10일 경 다시 K건설사에 복귀하여 '08.2.1까지 근로하고 사직하였다면,

◆ A는 K사를 떠나 H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이미 K사와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복귀한 '08.2.1부터 1년간의 계속근로요건이 충족된 후 퇴직사실이 있어야 비로소 퇴직금 수급요건이 된다.

## 퇴직공제부금

### ◆ 당연가입대상공사

구분	개정	개방법령 적용례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008.1.10이후(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2008.1.28이후) 최초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 신고 -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의 신청 -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사	
6.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사	
7.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임

###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기준

-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 ◎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 원·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 금액산출명세서에 명시할 것
- ◎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 고용된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 피공제자의 범위(법제11조, 영제11조, 규칙제12조)
-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임시·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 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 ②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③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건설 일용근로자라도 1년이상 계속근무하여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부터 퇴직공제 적용이 제외됨.

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외국 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 체크사항

-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근무작성시 퇴직공제부금 신고제외.
- 근로계약서에 1년미만 근무로 작성하였지만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하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신고제외. 신고분에 대해서는 환급 안됨.

◆ 고용허가 신청요건

1.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및 고용가능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일정기간(7일)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3. 내국인 구인신청 2월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일(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 5월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일(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일 것

외국인 고용허가제

1993년 11월에 도입되어 국내 3D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 그 이후에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운용하

◆ 도입허가 업종

구분	도입허용 업종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의 전업종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 냉장/냉동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 음식점업, 건축일반,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육탕업, 개인 간병인, 가사 서비스업, 산동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도매업,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상품 전문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시설물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산업용 세탁업, 육상여객 운수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일부 관광호텔 및 숙박업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6. 기고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선발·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사항

1. 제9조3항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7조1항 :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8조1항 :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제22조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제29조(벌칙) :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 4대보험 가입여부

-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
- 고용보험은 체류 자격별로 적용방식이 다름

◆ 노동조합 가입여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가입 가능(판례 및 행정해석)

◆ 비정규직법적용여부

- 적용됨 ○



널리 알려진 말의 유래

다모클레스의 칼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의 참주(僭主) 디오니시오스 1세의 신하다. 다모클레스가 디오니시오스 왕의 권력과 행복을 부러워하며 아첨하자 디오니시오스 왕은 다모클레스를 연회에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신의 옷을 입혀 왕좌에 앉게 했다 그런데 다모클레스가 무심코 천장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는 한 가닥의 머리칼에 칼이 매달려 있었다. 다모클레스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디오니시오스 왕은 행복해 보이는 권력자의 자리가 위험과 불안이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다모클레스에게 깨닫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키케로에 의해 전해졌고, 이후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1961년 UN 총회에서 당시의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이 속담을 인용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연설하였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